

# 정부지원자금 (I)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정부관련부처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국산화나 대외경쟁력있는 기술과제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 정보통신진흥기금

- 공동사업 : 5억원 이하
- 동일인 한도 : 5억원 이하

### 1.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사업 추진배경

-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시
- 정보통신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활동 장려
-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으로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 대출금 상환방법 예시;  
최초 자금인출 시점이 '93. 11. 1일의 경우에 거치기간이 되는 '95. 10월말까지 이자만 상환후 '95. 11. 1일부터 3년간 원리금 상환

### 2. 지원조건

- 가. 대상사업분야 :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정보통신기술개발
- 나. 융자금리 : 년 6.5%
- 다. 융자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라. 사업부문별 지원한도
  - 과제당 한도
  - 단일사업 : 3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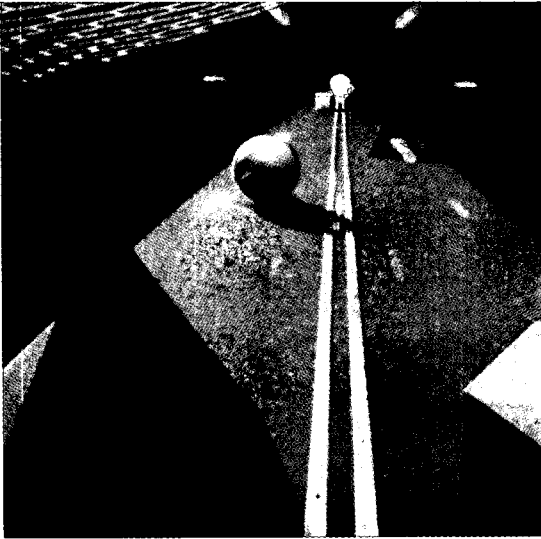
### 3. 지원대상 및 방법

#### 가. 지원대상

-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소요되는 설비구입과 연구시설 개체
- 부가통신사업자 및 전산망사업자의 설비현대화
  - 전기통신역무 및 전산망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 또는 교체시 지원

'93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

사업구분	용자규모	대 상 사 업 분 야	지원범위	비 고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 지원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과 시설 개체</li> <li>-통신기기(유·무선 포함)</li> <li>-정보기기(컴퓨터본체, 주변기기)</li> <li>-부품(능동, 수동, 기구부품)</li> <li>· 부가통신사업자 및 전산망 사업자의 설비현대화</li> <li>-DB, DP, VAN, S/W (시스템, 응용)</li> </ul>	소 요 자 금 의 80% 이내	4월 21일까지 전자통신연구 소에서 과제 접수하여 1차 실태조사중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원	2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시스템기술</li> <li>· 전파기술</li> <li>· DB기술</li> <li>· S/W기술</li> <li>·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술</li> <li>· 반도체기술</li> <li>· 정보통신부품기술</li> <li>· 정보통신서비스기술</li> </ul>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	2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주전산기의 보급, 확대를 추 진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구입 자금 지원 (정보통신관련 리스회사를 통한 간 접지원)</li> </ul>	소 요 자 금 의 100%이내	세부계획 미 정, 추후 별도 공고
국책연구개발 사업 지원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AN B-ISDN(광대역종합정보통 신망), 디지털 이동통신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분야 국책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지원</li> </ul>	소 요 자 금 의 70%이내	



-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 각 대상사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시 지원

#### 나. 우선지원대상

- 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수행하려는 사업
- 2개기업 이상의 공동수행사업 및 업체와 연구기관의 공동수행사업

#### 다. 공동개발사업 인정범위

-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업체 또는 연구기관등이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라. 업체별 동시수행 과제수의 범위

- 각 업체별로 동시에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2개 이내이며, 정부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업체는 3개과제까지 수행 인정

### 4. 지원대상 제외

- 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자로서 동일과제 기금 신청자

- 나.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과제 수행자가 사업성과 분석 및 연구개발 평가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 다. 기타 체신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5. 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지정

### 6. 사업계획 신청

- 가. 사업계획신청서 : 관리기관 및 기금취급은행 본점에서 배부

#### 나.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포함)
- 2) 제출서류 (각 10부)
  -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세무서 확인자료)
  - 다)사업자 및 참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인정서 사본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 라)사업자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무서 확인자료)
  - 마)정부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서 사본
  - 바)연구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 사)은행거래 확인원

## 7.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및 통보

- 가.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지원대상업자를 추천하고, 체신부장관은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
- 나. 체신부장관은 선정한 사업자를 관리기관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

## 8. 예비사업자 선정

- 가.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기금에 한하여 지원규모의 30%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 나. 체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예비사업자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를 관리기관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지원기금중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포기분 및 대출승인기한 경과분등 여유자금의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출승인절차가 완료된 예비사업자에 한함

## 9. 기금의 지원

- 가. 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재의 구입가액이 변경되거나 담보부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다.
- 나. 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후 4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야하며, 선정통

보후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기관의 장은 4개월 범위내에서 대출완료 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 10. 집행 및 실적보고

- 가.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자금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타용도에 집행하지 못하며, 사용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해야 함
- 나. 사업자는 사업종료일 도래시 사업비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취급은행에 반납하고 그 증빙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업비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함

## 11. 사후관리

- 가.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사업내용의 증대한 변경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1) 사업진도보고서 (사업기간중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 2)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후 2개월 이

내)

- 3) 사업성과보고서 (사업완료후 2년간 매 분기 종료후 3개월 이내)
-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사업기간중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

## 12. 사업심의 및 선정과 자금지원 절차

### 가. 사업심의

#### 1) 소위원회 (제 1단계)

##### 가) 신규사업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중복성여부 검토 및 지원제외대상자 판별

##### 나) 사업내용 변경 : 변경요청서 검토

##### 다) 계속사업

- 현장실태조사
- 차년도 사업계획 검토

##### 라) 사업진도 점검

#### 2) 기금사업 분과위원회 (제2단계)

##### 가)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의 적정성 검토

##### 나) 각 사업별 평가(평가항목에 의거 평점 산정)

##### 다) 종합심사의견서 작성

#### 3) 기금사업위원회 (제3단계)

##### 가) 기금사업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

##### 나) 분야별 자금배분, 최종순위 조정, 예비사업자 심의

### 나. 사업선정

관리기관내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제는 관리기관에서 체신부에 추천하며 체신부는 최종 검토를 거친후 사업선정



### 다. 자금지원

#### 가) 사업비 대여절차

-체신부에서 사업자 선정 ⇒ 관리기관과 기금취급은행에 통보하고, 관리기관은 사업자에게 통보 ⇒ 취급은행은 사업자에 대한 대출승인조치를 4개월 이내에 실시 ⇒ 사업자는 대출승인후 8개월내에 대출완료해야 하며,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개월내에서 1회에 한해 대출완료 기한연장 가능

#### 나) 사업비 회수

-취급은행은 사업자가 본래의 목적외에 정해진 사업비를 유용할 경우 원금과 대출금 인출시부터 회수일까지 취급은행의 최고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징수

전화번호 : (042) 860-5955/7

팩스번호 : (042) 860-5996, 6058

### 13. 관리기관 및 기금취급은행 연락처

#### 가. 관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우)305-350

#### 나. 기금취급은행

-국민은행 (대표전화(02)398-6114)

-중소기업은행 (대표전화(02)729-6114)

-장기신용은행 (대표전화(02)317-2114)

-한국산업은행 (대표전화(02)782-0111)

-한국종합기술금융 전자팀

(대표전화(02)782-7600)

### 14. 사업접수에서 자금지원까지의 세부일정

년 월	93						94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① 관리기관의 과제접수															
② 소위원회 심의															
③ 기금사업 분과위원회 심의															
④ 기금사업위원회 심의															
⑤ 관리기관에서 심의결과로 결정된 과제를 체신부에 추천															
⑥ 체신부는 추천된 과제를 최종선정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															
⑦ 관리기관은 사업수행 선정업체에 통보															
⑧ 기금취급은행은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대출승인조치여부 결정															
⑨ 대출승인후 자금인출시작															
⑩ 자금인출 완료(대출완료)															